

# 2001년도 개정 지방세 과세표준 해설

전 동 혼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 I. 개정방향

금년도의 지방세 과세표준의 개선방향은 첫째, 지방재정충당을 위한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과세물건의 시장가격인 시가를 지방세과세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과세표준을 정하고 둘째, 납세자간의 형평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의 사회경제적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방세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과표결정자율권을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간의 과세표준의 불균형을 시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넷째, 그 동안 지방세과표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토지과표를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인 90%내지 100%를 정하도록 하였고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등 각종 지방세과세물건의 시장가격을 재조사하여 시가를 반영한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삼도록 개선하였으며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건물과표의 가감산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지수와 용도지수를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조정하였다.